

#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379,960천원으로서, 이중 9건에 616,4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계(9건)	616,400천원
○ 대관령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	25,000천원
○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	362,700천원
○ 풍수해 보험사업	111,000천원
○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(인건비)	34,500천원
○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(사무관리비)	8,100천원
○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(공공운영비)	4,100천원
○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(재료비)	1,000천원
○ AI차단방역 및 통제초소 운영(시설비)	6,000천원
○ 평창대화통합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긴급대책 운영비	64,000천원 임.

## 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
## 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